##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01

발의연월일: 2024. 9. 27.

발 의 자:유상범·주진우·박형수

조배숙 • 조경태 • 박준태

정점식 · 서명옥 · 엄태영

송석준 • 곽규택 • 김미애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만 가능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,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###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30"을 "40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·도지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조(외국인정책위원회) ①・②	제8조(외국인정책위원회) ①・②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	③		
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	<u>40</u>		
하며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			
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			
된다.		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3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		
	항제1호에 따른 시·도지사		
	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장		
	•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		
	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		
	치단체의 장 각 1명		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		